

1. 개정이유

제조업·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‘통상조약 등’에서 ‘외국통상조치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569호, 2026. 4. 21. 공포, 2026. 10. 22. 시행)됨에 따라,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‘외국통상조치’를 추가함(별지 서식7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협의완료

라. 기타 : 해당 없음
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**이행**”을 “**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관리번호		

신청인	자 격 [] 근로자대표 [] 사업주	
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
	전화번호	휴대폰번호

기업 개요	상호(명칭)		사업장관리번호				
	사업자등록번호		설립 연월일				
	소재지						
	전화번호		팩스				
	성명(대표자)		근로자수				
	업 종	업종명	주생산품목				
	업종코드						

기업 통상영향 유형	[]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
	[]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
	[]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

신청내용	성 명	생년월일	직종코드			근무기간	근로자 통상영향 유형
							1.실직 2.실직예정 3.근로시간 단축 4.근로시간 단축예정
							[] 1. [] 2. [] 3. [] 4.
							[] 1. [] 2. [] 3. [] 4.
							[] 1. [] 2. [] 3. [] 4.

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

(뒤쪽)

첨 부 서 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.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-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.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- 「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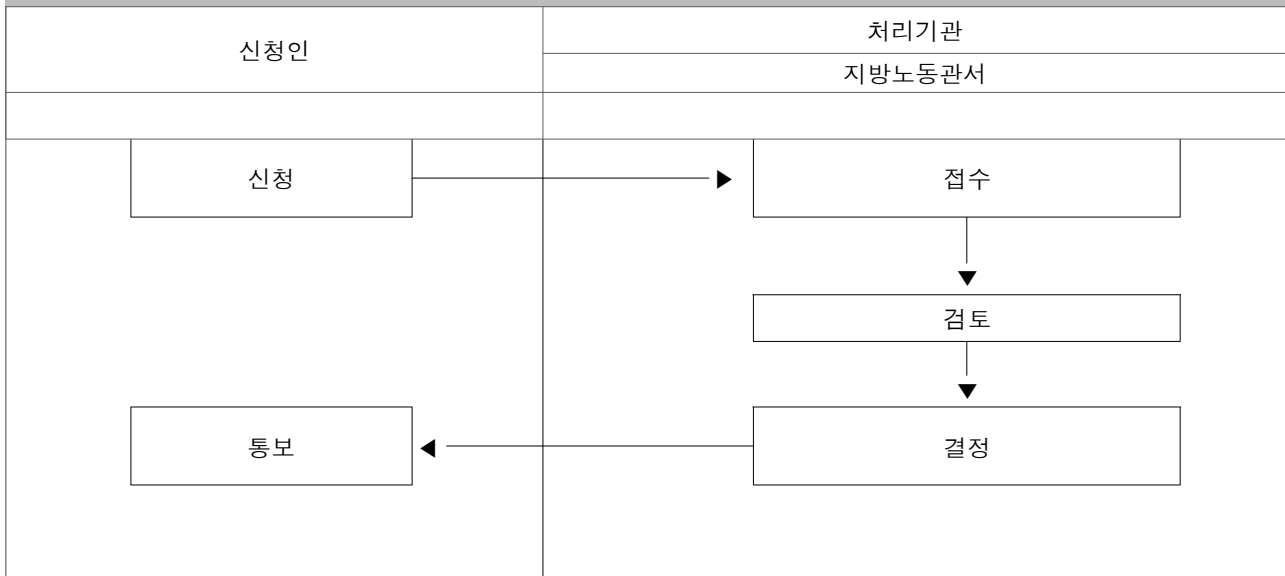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1.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.
2.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.
3.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(통계청 고시 제2024-203호)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.
4. 신청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. 직종코드란은 부표[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(140개) 직종현황]를 참고하여 적습니다.
6. 근로자 통상영향 유형란은 해당하는 통상영향 유형의 번호에 √ 표를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